

3-2-2 일상생활 고충/민·형사 사건 관련 고충/금품관계(사기,환전,송금 등)

금품 사기사건

○상담개요

근로자 S씨는 현재 사업장변경 구직활동중인데 사기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직활동기간 중에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근로자 S씨는 2017년에 입국하여 페이스북 계정 'Sok Vatra'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거짓 해외 송금 광고를 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의자들은 페이스북 계정 'Sok Vatra'에 "캄보디아로 돈을 보내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수수료도 아주 싸다"는 광고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K씨(결혼 이주여성)에게서 연락이 오자 "55만원을 입금하면 500달러를 수신인 G(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함
- 2018.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자 S씨 명의 농협계좌로 55만원을 받음
- 피해자 S씨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500달러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 광고를 믿고 근로자 S씨와 페이스북 계정 'Sok Vatra'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근로자 S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약속한 500달러를 송금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의자의 계정을 삭제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를 함
- 경찰에서는 근로자 S씨가 피해자 K씨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곧바로 '한패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업체 WING사(금융기관(은행)이 아닌 단순 송금업체로 휴대전화만 있으면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S씨는 한국에서 근로자(E-9)로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캄보디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송금을 대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음
- 한패스란? (주)한패스에서 제공하는 외화 송금서비스로 일정 송금 수수료를 제공하면 국외로 송금을 대신해 주고 있으며 다른 송금 서비스와 달리 은행이 아닌 전당포

등에서도 송금된 돈을 수령할 수 있음

- 근로자 S씨는 사기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피해자 K씨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였고, 피해자 K씨도 피해금을 돌려받았다고 함
- 근로자 S씨는 'Sok Vatra'로부터 속아서 피해를 보았으며 추후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함
- 경찰에서는 근로자 S씨가 제출한 증거자료(페이스북 대화내역, 해외송금 내역)로 보아 'Sok Vatra'로부터 속아 제3자 사기의 중가역할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함
- 검찰에서는 불기소 이유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과 통보를 받고 본국으로 휴가를 가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의 경우 검찰에 기소가 되었으나 처분결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불기소 처분 요지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페이스북 계정 'Sok Vatra'를 사용하는 피의자는 근로자 S씨와 피해자 K씨를 속여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됨
- 피해금을 이체 받을 때 사용한 캄보디아 내 휴대전화번호가 유일한 증거이나 현재 국외에서 사용되는 점
- 선불 휴대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소재불명으로 사실상 수사 불가능
- 피해자는 모든 피해금을 근로자 S씨로부터 돌려받았고, 근로자 S씨는 추후 이 사건을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선불, 후불 휴대전화와 달리 1천원만 있으면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인한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하기 어려움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7]]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 2010.12.30: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